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28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권명호 · 김영식
김용판 · 김정재 · 김형동
박덕흠 · 양금희 · 위성곤
이태규 · 정희용 · 태영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음식료품류, 화장품류,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**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**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**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 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).**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
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포장방법과 포장재의”를 “포장재
의”로 한다.

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
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장방법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자등이 제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
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</u>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u>2의2. 2의3.</u> (생 략)</p> <p>3. ~ 16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9조(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 ---<u>포장재의</u>----- ----- ---</p> <p>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</u></p> <p><u>2의3. 2의4.</u> (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)</p> <p>3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